

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등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19년 2월 15일(금)

□ **대상 펀드:**

1. AB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2.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1. AB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※ 주식사항	종류 추가	주 3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이외에 종류 C-w, 종류 I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주 3) 상기 종류 수익증권 이외에 종류 C-w, 종류 I, 종류 Ce-P, 종류 Ce-P2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제 1 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추가		종류 C-P, Ce-P, C-P2, Ce-P2, S-P 추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종류 추가		종류 C-P, Ce-P, C-P2, Ce-P2, S-P 추가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, 나. 종류형 구조	종류 추가		(종류 C-P, Ce-P, C-P2, Ce-P2, S-P 추가) 종류 C-P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e-P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C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종류 Ce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종류 S-P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3) 종류별 가입자격			

			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종류 추가		종류 C-P, Ce-P, C-P2, Ce-P2, S-P 추가에 따른 보수/비용 및 수수료 내역 업데이트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사항,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) 회사의 개요	채권평가회사 주소이전	- 에프앤자산평가: <u>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</u>	- 에프앤자산평가: <u>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</u>

□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협회펀드코드	종류 추가	<u><추가></u>	<u>종류 C-P: CK844</u> <u>종류 Ce-P: CK845</u> <u>종류 C-P2: CK846</u> <u>종류 Ce-P2: CK847</u> <u>종류 S-P: CK850</u>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종류 추가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 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1~7. <생략> <u>8~12. <추가></u>	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7. <현행과 동일> <u>8. 종류 C-P 수익증권</u> <u>9. 종류 Ce-P 수익증권</u> <u>10. 종류 C-P2 수익증권</u> <u>11. 종류 Ce-P2 수익증권</u> <u>12. 종류 S-P 수익증권</u>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종류 추가	① <생략> 1~7. <생략> <u>8~12. <추가></u>	① <현행과 동일>. 1~7. <현행과 동일> <u>8. 종류 C-P 수익증권</u> <u>9. 종류 Ce-P 수익증권</u> <u>10. 종류 C-P2 수익증권</u> <u>11. 종류 Ce-P2 수익증권</u> <u>12. 종류 S-P 수익증권</u>
제 25 조(판매가격)	종류 추가	① <생략> 1~5. <생략> 6. 종류 I 수익증권: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9조 제5항 제4호, 법시행령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 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	① <현행과 동일> 1~5. <현행과 동일> 6. 종류 I 수익증권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시행령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<u>(삭제)</u> 50 억 이상 개인, 75 억 이상

		<p>제외),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전문투자자</u>, 50억 이상 개인, 75억 이상 법인</p> <p>7. <생략></p> <p>8~12. <추가></p>	<p>법인</p> <p>7. <현행과 동일></p> <p>8. 종류 C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 <p>9. 종류 Ce-P 수익증권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10. 종류 C-P2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</p> <p>11. 종류 Ce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12. 종류 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</p>
제 39 조(보수), 제 3 항	종류 추가		<p>③ <추가></p> <p>(종류 C-P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60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 <p>(종류 Ce-P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30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 <p>(종류 C-P2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50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 <p>(종류 Ce-P2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25%</p>

			<p>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 <p>(종류 S-P)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18%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
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제 1 항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① <생략></p> <p>1~2. <생략></p> <p>3. <신설></p>	<p>① <현행과 동일></p> <p>1~2. <현행과 동일></p> <p>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</p>
제 52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종류 추가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 또는 "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"에 따라 통장거래등을 할 수 있다.

2.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자료 업데이트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나. 피투자 펀드의 투자전략 2) 투자전략 및 투자정책 - 신용도	피투자펀드 투자전략 문구 변경내용 반영	<p>피투자펀드의 자산은 투자적격 등급 및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. 피투자펀드는 매입시 Moody's 의 Caa1, S&P 의 CCC+ 또는 Fitch 의 CCC 등급 이하의 증권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. 두개의 상이한 등급이 부여된 경우 더 낮은 등급으로 결정됩니다. 세 개 이상의 상이한 등급이 부여된 경우 두개의 상위 등급 중 더 낮은 등급으로 결정됩니다. 특정증권의 등급이 매입이후 Moody's 의</p>	<p>피투자펀드의 자산은 투자적격등급 및 투자부적격등급 증권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는 순자산의 최대 10%까지 Moody's의 Caa1, S&P의 CCC+ 또는 Fitch의 CCC 등급 이하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두개의 상이한 등급이 부여된 경우 더 낮은 등급으로 결정됩니다. 세 개 이상의 상이한 등급이 부여된 경우 두개의 상위 등급 중 더 낮은 등급으로 결정됩니다.</p>

		<u>Caa1, S&P 의 CCC+ 또는 Fitch 의 CCC 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경우, 운용자는 동 증권을 6 개월내에 매도하여야 하며, 다만, 동 기간내에 최저 등급요건 또는 그보다 높은 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유형 - 변동성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<u>3년 변동성: 3.05%</u>	<u>3년 변동성: 3.04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,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정기결산에 따른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,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채권평가회사 주소이전	- 에프앤자산평가: <u>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</u>	- 에프앤자산평가: <u>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</u>

□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49 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제 1 항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① <생략> 1~2. <생략> 3. <u><신설></u>	① <현행과 동일> 1~2. <현행과 동일> 3. <u>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</u>

※ 상기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최종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